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27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6.

발 의 자: 강득구·송재봉·송기헌

김준형 • 전현희 • 박홍배

이학영 • 추미애 • 임광현

김남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택시나 버스 등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벽 등 안전시설설치를 유도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. 다만, 국토교통부령에 근거하여 시내버스 등에 한하여 칸막이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택시는 버스보다 공간이 협소한 만큼 각종 범죄나 전염병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칸막이벽시설이 더 크게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칸막이벽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, 칸막이벽시설을 설치·개선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제52조의2에 따른 칸막이벽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
- 3. 제52조의2에 따른 칸막이벽시설을 설치·개선하는 경우 제5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2조의2(칸막이벽시설의 설치 권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와 여객을 보 호할 수 있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2항제9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재정 지원) ① (생 략)	제50조(재정 지원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	2
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	
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	
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	
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이 경	
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	
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	
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
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	
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9. 제52조의2에 따른 칸막이벽
	<u>시설을 설치·개선하는 경우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	4
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	
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	
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52조의2에 따른 칸막이벽

⑤ ~ ⑨ (생 략) <u><신 설></u> 시설을 설치·개선하는 경우
(5) ~ (9) (현행과 같음)
제52조의2(칸막이벽시설의 설치
권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
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수종사
자와 여객을 보호할 수 있는
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하도록 권
장하여야 한다.